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올림픽추진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2018년 3월 31일 까지 연장하여 동계올림픽 조직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 사항
 - 한시기구인 올림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
 - 2016년 12월 31일 ⇒ 2018년 3월 31일까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.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)
- 2) 규제심사, 부패연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: 저촉사항 없음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208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
제2조 중 “2016년 12월 31일”을 2018년 3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칙(2016.02.19. 조례 제2208호) 제1조 (생략) 제2조(한시지구 존속기한) 한시기 구인 올림픽추진단의 존속기한은 <u>2016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하고, 올림 픽운영과의 존속기한은 2017.12.31. 일까지로 한다.	부칙(2016.02.19. 조례 제2208호) 제1조(현행과 같음) 제2조(한시지구 존속기한)----- ----- <u>2018년 3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정 성 문
연락처	(033) 330 - 2210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(이하생략)

②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(생략)

④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